

의안번호	2213909
의 퇴 인	김원이 의원
회 답 일	2025. 12. 5.
추계번호	25A5823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6조 (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전략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기술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4. 산업계·학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 고부가·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금액이 민간기업의 회계상 부채로 과도하게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여 재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13조 (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 (고용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5조 (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6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제2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9	안 제17조 (수입동향조사 등)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 (세제 지원)	
3	안 제6조 (재정 지원 등)	
4	안 제12조 (연구개발 지원)	
5	안 제13조 (인력 양성 지원)	
6	안 제14조 (고용 지원)	
7	안 제15조 (지역경제 지원)	
8	안 제16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9	안 제17조 (수입동향조사 등)	
10	안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¹⁾과, 이에 따른 각종 세제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개정안에는 재정수입의 감소 요인과 재정지출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의 감소**는 세제 지원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과 기술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임
 - － **안 제5조**에 따라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국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12조**에 따라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경우 기술료 수입(기타재산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재정지출의 증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설비,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동향 조사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분임
 - － **안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전환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관련 통계 작성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1) 안 제2조제5호에 따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을 의미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나.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야나 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표]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 요인

구분	내용	
재정수입의 감소	국세 수입	· (제5조)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과세이연 등 세제 지원
	세외 수입	· (제12조)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
재정지출의 증가	· (제6조)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 (제12조)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핵심전략기술에 대하여 ①시범설비 등 공용 기반시설 설치, ②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평가 및 판로지원, ③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④고부가·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등 우선 지원 · (제13조) 석유화학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 지원 · (제14조) 석유화학산업 설비 합리화 및 사업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 (제15조) 석유화학사업자 입주 지역의 고용 감소 및 협력업체 피해 등 지원 · (제16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 · (제17조) 석유화학제품 수입 동향 조사·분석	

□ 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수입의 감소액과 재정지출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각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세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에 따라 실시될 세제 지원의 기준과 지원 수준 등을 정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고 제정안의 내용과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항과 유사한 취지로 既 운영 중인 조세지출 항목이 있는 경우 감면 실적 등을 참고하여 추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현행 조세지출 항목 중 제정안에 따른 세제 지원과 유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세외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준·범위 및 기술료 감면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음

-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화학사업자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기준, 기간 및 범위와 민관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실시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해당 내용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고, 사업의 내용 및 예산 규모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의 특성상 지출 수준 또한 국가재정 여건 및 정부의 재원 투입 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제정안 제16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제17조(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입동향조사)에 대하여, 향후 5년간(2027~2031년) 각각 115억원, 1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²⁾

* [참고자료 1]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수입동향조사 소요 예산(산업통상부 추산)

□ 참고로, 제정안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 실시 중인 재정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산업통상부는 제정안 제12조(연구개발 지원)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R&D 사업을 실시 중이며, 2025년 예산은 총 867억 2,600만원임
- 고용노동부의 경우 제정안 제14조(고용 지원)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해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나,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거나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일자리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은 총 846억 6,000만원임(예산현액 기준)

* [참고자료 2] 석유화학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 또한, 제정안 제15조(지역경제 지원)와 관련하여,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및 과세 특례 등이 적용되고 있음

* [참고자료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현황

□ 이에 제정안에 따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지원 및 각종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과 재정지출

2) 세부적인 산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제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수입동향조사 소요 예산
(산업통상부 추산)

안 제16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따른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통계 D/B시스템 구축	2,000	2,000	2,000	1,000	1,000	8,000
시스템 유지보수	200	200	200	200	200	1,000
실태조사	200	200	200	200	200	1,000
기본통계 작성	200	200	200	200	200	1,000
경기전망조사	100	100	100	100	100	500
합계	2,700	2,700	2,700	1,700	1,700	11,500

자료: 산업통상부

안 제17조(석유화학제품 수입동향조사)에 따른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스템 개발/인프라 구축	2,500	2,500	2,500	300	300	8,100
AI 예측모델 개발	1,000	1,000	1,000	—	—	3,000
시스템 유지보수	300	300	300	300	300	1,500
수입동향조사 전담인력(인건비)	140	140	140	140	140	700
합계	3,940	3,940	3,940	740	740	13,300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2] 석유화학산업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회계, 코드) -내(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5년도 예산(2차추경) ¹⁾
산업 통 상 부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소재개발사업 (일반회계, 3541-350)	국가필수전략(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소재 개발	4,045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제도약 (일반회계, 3541-370)	범용소재 중심의 고기능·신기능 탄성소재 기술개발	4,000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소재 초격차기술개발실증사업 (일반회계, 3541-408)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의 국산화를 위한 초격차 제품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2,500
	글로벌 재활용 규제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일반회계, 3541-317)	탄소중립,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대응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지원으로 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	1,200
	소재부품기술개발 -고기능·친환경·범용소재 (소특회계, 3231-302)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 완화, 탄소중립· 친환경 전환에 대응 가능한 고부가 소재· 부품 기술을 확보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 지원	52,421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석유화학분야 (기후기금, 6431-590)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제조업의 그린전환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	18,150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 NCC 공정개발 (기후기금, 6431-595)	무탄소 연료기반 공정기술을 열분해공정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4,410
	합계		86,726
고 용 노 동 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보기금, 1045-350)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휴업수당 등) 일부 지원 * 사업재편승인기업(과잉공급 해소형)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적극 인정	81,318
	산업·일자리전환지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기후기금, 6332-304)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사업주의 원활한 산업·일자리전환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직무전환 훈련 또는 전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3,342
	합계		84,660

주: 1) 각 사업의 예산 중 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만 발제한 것임
자료: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 현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①보조율 우대*, ②의무투자 요건 완화(대기업 300억→150억), ③타당성평가 기준점수 완화(60점→50점), ④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30명→10명) * (대기업) 설비 3~8% → 11% (중견기업) 입지 10~20% → 25%, 설비 5~11% → 19% (중소기업) 입지 9~40% → 50%, 설비 7~14% → 24%
② 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정책자금 지원 - 산업위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①경영애로 사유 발생 인정, ②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중소기업)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 또는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 (소상공인)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 10% 이상 감소 - 중소기업 : 한도 10억원, 5년(거치2년), 중진공 정책자금 금리+0.5%p,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5년(거치2년), 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③ 보통교부세	• 지자체 재정수요금액에 산업위기지역 시책수요* 금액을 가산 * 동종 지자체(광역시·초)별 1인당 일반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등) x 생산가능인구 x 120%
④ 법인세·소득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⑤ 과세 특례	• 1인당 임금총액 감소(예 :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수와 근로자 시간당 임금을 축소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총액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중견기업도 동 특례 대상에 포함
⑥ 국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2년),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유예기간 연장(2년)
⑦ 관세조사	• 중소기업 정기 관세조사(4년 주기) 유예(1년), 관세 납부기한 연장(15일→1년)·분납 허용(최대 1년 범위 내) 등 관세청 세정지원
⑧ 공유수면 점·사용료	• 해수부 및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징수하는 점·사용료 50% 감면

자료: 산업통상부

고용위기지역 지원 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 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가능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채납시 연체금 징수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채납시 연체금 미부과 채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채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채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252만 원)		(생활안정자금) 4인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5년 월 305만 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총 3,000만 원(2종류 이상 융자 시)
채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 용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2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